
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6. 7.

발의자 : 추경호 · 정태옥 · 강효상

김광림 · 정진석 · 최교일

윤재옥 · 김정재 · 정종섭

곽상도 · 박명재 · 장석춘

김상훈 · 곽대훈 · 송언석

주호영 · 김규환 · 임이자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물기술인증원은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기관으로 국민의 먹는 물 안전과 직결되는 물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인증·검증 업무를 수행하며, 인증관련 기준 및 기술개발,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등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.

한편, 「국가재정법」은 “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,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 등에 필요

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
국내 물 기업들에게 최상의 인·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전문기관
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여, 국내 물 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
국민의 먹는 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5항).
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5항 중 “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) ① ~ ④ (생 략)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·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 ⑥ (생 략)	제19조(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<u>출연</u> <u>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</u> ⑥ (현행과 같음)